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903

발의연월일: 2020. 9. 15.

발 의 자:한정애·송재호·오영환

기동민・박성준・황운하

아뉴진(비) · 김용민 · 김승원

박홍근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생생물 등을 보전·연구하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오락 체험 등 상업적 목적 위주로 운영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바, 동물원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고 사업범위를 명시하는 등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을 보완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적정한 관리가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원 및 수족관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정의규정에 명시함(안 제2조).

- 나. 동물원 및 수족관의 사업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의3 신설).
- 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함(안 제3조).
- 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 관 제도를 도입함(안 제4조의3 신설).
- 마. 동물원 및 수족관의 보유 동물과 관련한 금지행위를 추가함(안 제7조).
- 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함(안 제8조의2 및 제9조제1호의2 신설).
- 사. 환경부장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감독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 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신설).
- 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 등이 설립한 동물원 및 수족관은 사업목 적에 부합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4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국민들"을 각각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 민"으로 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사업) 동물원 및 수족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1. 야생동물 등과 그 서식지의 단면 전시
- 2. 야생동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홍보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 위기 야생생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멸종위기종"이라 한다)의 보전·증식 및 관련 조사·연구
- 4. 구조되거나 치료된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보호
- 5. 야생생물 등의 생태·보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행사의 개최, 간행물 발간 등
- 6. 국내외 동물원 및 수족관과의 정보의 교류, 공동 연구 등
- 7.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후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2. 멸종위기종 및 해양보호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을 보유 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
 -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경 제공 및 안전관리
 - 4.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 5. 휴원 ·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3(검사관)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 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 행 경력이 있는 사람
 -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 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

을 가지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② 검사관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이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또는 임명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렁으로 정한다.

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을 "공동부령"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관람객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동물을 만지거나 보유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보유 생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질병 등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제9조제1호 중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목록"을 "제3조제1항 각 호의 현황 및 그 현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8조의2에 따른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사항 제12조제1항제1호 중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사항"을 "따라 허가받은 사항"으로 한다.

제12조의2 및 제14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2조의2(관리감독 기준) 환경부장관은 제3조의 허가, 제4조의 허가 취소, 제11조의 지도·점검 및 제12조의 조치명령 등에 필요한 지침 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 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자발 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중 "등록을"을 "허가를"로 한다.

제1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제3호 중 "제7조제4호"를 "제7조제1항제4호·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
- 2.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 3.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의2.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의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유 동물을 만지거나 보유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허용한 자
- 3의3.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보유생물을 전시한 자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을 한 자는 이 법에 따라 동물원 및 수족관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동물원"이란 야생동물 등을	1
보전 · 증식하거나 그 생태 ·	
습성을 조사 · 연구함으로써	
<u>국민들</u> 에게 전시·교육을 통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국민-
해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족관"이란 해양생물 또는	2
담수생물 등을 보전·증식하	
거나 그 생태・습성을 조사	
·연구함으로써 <u>국민들</u> 에게	<u>생물다양성을</u>
전시 · 교육을 통해 해양생물	<u>보전하고 국민</u>
또는 담수생물 등에 대한 다	
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2조의3(사업) 동물원 및 수족관
	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

- 1. 야생동물 등과 그 서식지의 단면 전시
- 2. 야생동물 등의 생태·습성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교육・ 홍보
-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 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같 은 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이하 "멸종위기 종"이라 한다)의 보전·증식 및 관련 조사 · 연구
- 4. 구조되거나 치료된 야생동물 및 해양생물의 보호
- 5. 야생생물 등의 생태 · 보전 등에 관한 학술 조사·연구, 관련 행사의 개최, 간행물 발 간 등
- 6. 국내외 동물원 및 수족관과 의 정보의 교류, 공동 연구 등
- 7. 그 밖에 동물원 및 수족관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조(등록 등) ① 동물원 또는 제3조(허가 등)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동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다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 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에 대 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 다.

- 1. 시설의 명칭
- 2. 시설의 소재지
- 3. 시설의 명세
- 4. 시설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 5. 전문인력의 현황
- 6.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 고 있는 생물종 및 그 개체 수의 목록
- 7. 동물원 및 수족관이 보유하 고 있는 멸종위기종(「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및 제2조 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 기종을 말한다) 및 해양보호 생물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2 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

음 각 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후 동 물원 또는 수족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 1. 보유하려는 생물종 및 개체 수에 따른 시설 및 인력
- 2. 멸종위기종 및 해양보호생물 종(「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 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을 말한다)을 보유하려는 경우 해당 생물의 관리
 - 3.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 적정한 서식환 경 제공 및 안전관리
 - 4.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 5. 휴원ㆍ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

물을 말한다) 및 그 개체 수 의 목록

- 8. 보유 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 통 질병 관리계획, 적정한 서 식환경 제공계획, 안전관리계 획, 휴 · 폐원 시의 보유 생물 관리계획
- 수족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제1 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경우 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 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에 따른 사항 이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등 록 및 변경등록의 방법 및 절 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등록의 취소) ① 시·도지 제4조(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

- ②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변경 허가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등록을 취소할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취소하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 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등록한 경우
- 2.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
- 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 내에 등록증을 시 · 도지사에 반납하여야 한다.

<신 설>

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 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 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요건 을 갖추지 못한 경우
- 3. 제12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조의3(검사관) ① 시·도지사 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 여 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 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동물원 및 수 족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교 육을 받은 사람을 검사관(이하

-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른 동물원 및 수 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1.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야생동물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
- 2.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7년 이상 보전·사육·연구 등의 업무수행 경력이 있는 사람
- 3.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로서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7년 이상 수의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운영·관리와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점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의 허가,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동물원 및 수족관의 시설·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 · 폐원) ① ~ ③ (생 략)

- ④ 제3항에 따라 폐원신고를 | <삭 제> 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3조 제2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 여야 한다.
- ⑤ (생략)
-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제6조의2(생물종의 조사 등) ① (생 략)
 -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 •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 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 으로 정한다.
- 제7조(금지행위) 동물원 또는 수 7 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 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 동

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 경 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 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③ 그 밖에 검사관의 위촉 또 는 임명 절차, 업무 수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동물원 및 수족관의 개방 및 휴·폐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기	같	음)
----------	---	---	---

(현행과 같음)

(2)	
	공동
<u>부렁</u>	

제7조(금지행위)	<u>①</u>

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제9조(운영·관리 기록유지 및 보존)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보존) -----

- 1. ~ 4. (현행과 같음)
- 5. 관람객의 관람을 목적으로 동물에게 생태적 습성에 반하 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②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 하는 자는 동물원이나 수족관 을 이용하는 자에게 보유 동물 을 만지거나 보유 동물에게 먹 이를 주는 등의 행위를 허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 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보유 생물을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 다.

제8조의2(질병 등 관리)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보유 생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 생물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까지에 따른 현황 및 그 목록 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내역 <신 설>

2. (생략)

- 제12조(조치명령) ① 시·도지사는 동물원 또는 수족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 제3조에 <u>따른 등록 또는 변</u> <u>경등록사항</u>과 다르게 운영되 는 경우
 - 2. ~ 4. (생 략)
 - ② (생략)

<u><신 설></u>

1. 제3조제1항 각 호의 현황 및
그 현황
1의2. 제8조의2에 따른 보유 생
물의 건강상태 검사에 관한
<u>사항</u>
2. (현행과 같음)
제12조(조치명령) ①
1 <u>따라 허가받은 사항</u>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관리감독 기준) 환경부
장관은 제3조의 허가, 제4조의
허가취소, 제11조의 지도ㆍ점검
및 제12조의 조치명령 등에 필

<신 설>

제15조(청문) 시 · 도지사는 제4조 | 제15조(청문) ------제1항에 따라 동물원 · 수족관 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 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 · 도지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하다.

제1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동물원 및 수족관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본문 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 탁되는 금품을 사업목적에 부 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공 동부령으로 정한다.

허가를-----

제16조(벌칙) ① 제7조제1호부터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제3조에 따른 허가 또 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경등록 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를 작성

 하여 제출한 자
- 2. 제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

 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

 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신 설>
- 3. <u>제7조제4호</u>에 따른 행위를한 자<신 설>

<신 설>

- 2. 제3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한 자
- 3.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	
<삭	· 제>		

<삭 제>

- 2의2.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
 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3. <u>제7조제1항제4호·제5호</u>----
- 3의2.제7조제2항을위반하여보유동물을만지거나보유동물에게먹이를주는등의행위를허용한자3의3.제7조제3항을위반하여

4. ~ 7. (생략)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제18조(과태료)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각 계획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행하지 아니한 자
- 2. ~ 4. (생략)
- ② (생략)

허가받은 시설	이외에서	보유
생물을 전시한	자	

4. ~ 7. (현행과 같음)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